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0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5330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4. D
5. 주식회사 E
6. F
7. G
8. H
9. I
10. J 주식회사
11. K
12. L
13. M 주식회사
14. N
15. O
16. P

- 17. Q
- 18. 주식회사 R
- 19. 주식회사 S
- 20. T
- 21. U
- 22. V
- 23. W
- 24. X
- 25. 주식회사 Y
- 26. 주식회사 Z
- 27. AA 주식회사
- 28. AB
- 29. AC
- 30. AD
- 31. AE 주식회사
- 32. 주식회사 AF
- 33. AG
- 34. AH 주식회사
- 35. AI
- 36. AJ
- 37. 주식회사 AK

38. AL

39. AM

40. 주식회사 AN

41. 주식회사 AO

42. AP

43. 주식회사 AQ

44. AR 주식회사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청구금액표의 총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연도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1. 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별지1 목록 기재 청구금액표의 월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BD 주식회사(이하 'BD'이라 한다)가 신축·분양한 서울 성동구 BE 지상 B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B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BG호, BH호, 지하 1층 중 BI호, BJ

호, 지하 2층 중 BK호, BL호, 지하 3층 중 BM호, 지하 4층 중 BN호, 지하 5층 중 BO호(이하 '이 사건 피고 분양부분'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하면서 그곳에 지하변전소(이하 '이 사건 지하변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하변전소의 설치 경위

1) 피고는 2002.경 공고번호를 'BP'로, 공모명을 'BQ복합변전소 사업시행자 공모'로, 복합변전소 사용예정일을 '2006년 4월'로, 신청마감일시를 '2002. 11. 13. 15:00'로 각 정하여 '복합변전소 분양/임대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다.

2) BD은 200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변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취지의 유치신청서 및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3. 3. 11. BD 및 다른 지원자들의 유치신청서를 종합·검토하여 BD이 신축할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이 기본도면상 송배전 전력구의 시공성, 계통구성 비용, 기기배치의 적정성 및 변전소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3. 3. 25. 제3차 사업시행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BD을 BQ 복합변전소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03. 3. 26. BD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3. 11. 26. BD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분양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총칙)

사업시행자 BD(주)(이하 '갑'이라 한다)이 분양하는 복합건물 내에 한국전력공사(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의 변전소(이 사건 지하변전소, 이하 같다)를 건설함에 있어 관련 건물의 설계, 시공 및 분양계

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 "변전소"라 함은 복합건물(이 사건 건물, 이하 같다) 내에 건설되는 "을"의 전기공급설비 및 부대 시설을 총칭하는 말이다.
3. "분양계약"이라 함은 "갑"의 복합건물에 "을"의 변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 (시공부분 등의 업무구분)

- ① 복합건물 신축공사는 업무용 또는 주상건물 건설공사와 변전소 건설공사로 구분한다.

3. 복합건물의 층별 규모 및 용도

- 건물형태 : 복합건물(변전소 + 아파트형 공장)
- 건물면적 : 25,012.56㎡ 중 변전소 면적 4,840.51㎡
- 층별 규모 및 면적

단위 : ㎡

구 분	용 도	면 적	사업시행자 시설(갑)	전기공급시설(을) 전용	
지하 5층	변전소	2,031.25	-	2,031.25	케이블처리실
지하 4층	변전소	1,944.11	-	1,944.11	GIS, Mtr실
지하 3층	변전소	696.45	-	696.45	감시실
지하 2층	주차장/공장	2,916.73	2,864.71	52.02	계단
지하 1층	주차장/공장	2,760.30	2,708.28	52.02	계단
지상 1층	공장	1,297.83	1,233.17	64.66	계단
지상 2층 ~10층	공장	13,365.89	13,365.89	-	
합 계		25,012.56	20,172.05	4,840.51	
건물지분율		100%	80.65%	19.35%	

- ② 시공부분 등의 업무구분은 <별표1>의 "복합변전소 설계·시공 업무구분"과 같다. 다만, <별표1>의 내용 중 쿨링타워 기기실 건축공사 및 수냉각설비는 "을"이 필요시 추후 설계변경한다.
- ③ "갑"은 전력구 시설을 위한 작업공간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변전소 건물과 "을"의 신설 전력구와의 연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④ "갑"은 접지공사, 건물부분의 OPEN HOLE 등 전력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분(기자재 종류별 설치위치 및 방법변경)은 "을"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8조 (분양금, 계약금 및 계약이행보증)

① 분양금액

단위 : 원

구 분	토 지	건 물	부가가치세	합 계
금 액	2,028,971,100	10,396,205,000	1,039,620,500	13,464,796,600

○ 토지 분양면적 : 761.34㎡(21.77%)

- 주차장(2대분 : 23.0㎡)과 수냉각설비 옥외 쿨러실(82.11㎡)을 전용면적에 추가

$$(3,496.50\text{㎡} - 105.11\text{㎡}) \times 19.35\% + 105.11\text{㎡} = 761.34\text{㎡}$$

- 산출내역 : $761.34\text{㎡} \times 2,665,000\text{원(감정서 평균금액)} = 2,028,971,100\text{원}$

○ 건물 분양면적 : 4,840.51㎡(전체 25,012.56㎡의 19.35%)

- 산출내역 : $4,840.51\text{㎡} \times 2,147,750\text{원(희망분양단가)} = 10,396,205,000\text{원}$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① "갑"이 변전소 관련 부분 감독시에는 "을"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최종 승인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을"의 요구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이상으로 하되, "을"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을"과 사전협의된 제품을 사용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공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시공품질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을"은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감리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에게 착공 전 복합건물의 종합공정표와 변전소 부분의 공정표 각 5부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하여금 주간공정보고(다음주 월요일) 및 월간공정보고서(익월초)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갑"은 "을"의 현장확인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공부상 토지 지분 결정)

부지면적 중 공부상의 "을" 소유 토지지분은 건물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로 결정하되, 변전소 운영과 관련이 없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변전소 운용에 필요한 주차장 및 냉각탑부지는 전용부지로 추가하여 산정한다.

제14조 (인수검사 및 설비 등의 인도)

- ① "갑"은 건물 사용승인(부분 사용승인 포함한다) 및 준공검사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인수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을"의 검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 "갑"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 ② "갑"은 건물 사용승인(부분 사용승인 포함한다)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을"에게 인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을"의 인수검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 "갑"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이하 생략.
- ⑤ 인수검사에 대하여 "을"이 승인하고,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으로써 "갑"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⑥ "갑"은 변전소 시설부분 인계 시 "을"에게 변전소 건물분에 대한 준공도면 5부(CAD 작성, CD-ROM 보관분 1매 포함) 및 각종 설비에 대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시설한 부대시설에 대한 운전지침을 제공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분양대금의 정산)

- ① 분양계약 체결 후 변전소 건물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규모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 ② 건물 준공 후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면적의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확인에 의하여 건물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규모를 변경한다.

제18조 (변전소 운전 및 건물 유지관리)

- ② 변전소 부분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비(변전소 운영에 필요하여 "을"이 보수하는 부분은 제외)는 사

용승인일 이후 발생분부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변전소 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건물 관리권과 관리요원 임명권은 "갑"이 갖는다.

⑤ "갑"은 장비반입구, 쿨링기계실 등 변전소 운영에 관련된 전력설비에 대한 "을"의 사용 및 보수 등에 적극 협조한다.

<별표1> 복합변전소 설계·시공 업무구분

(갑 : 사업시행자, 을 : 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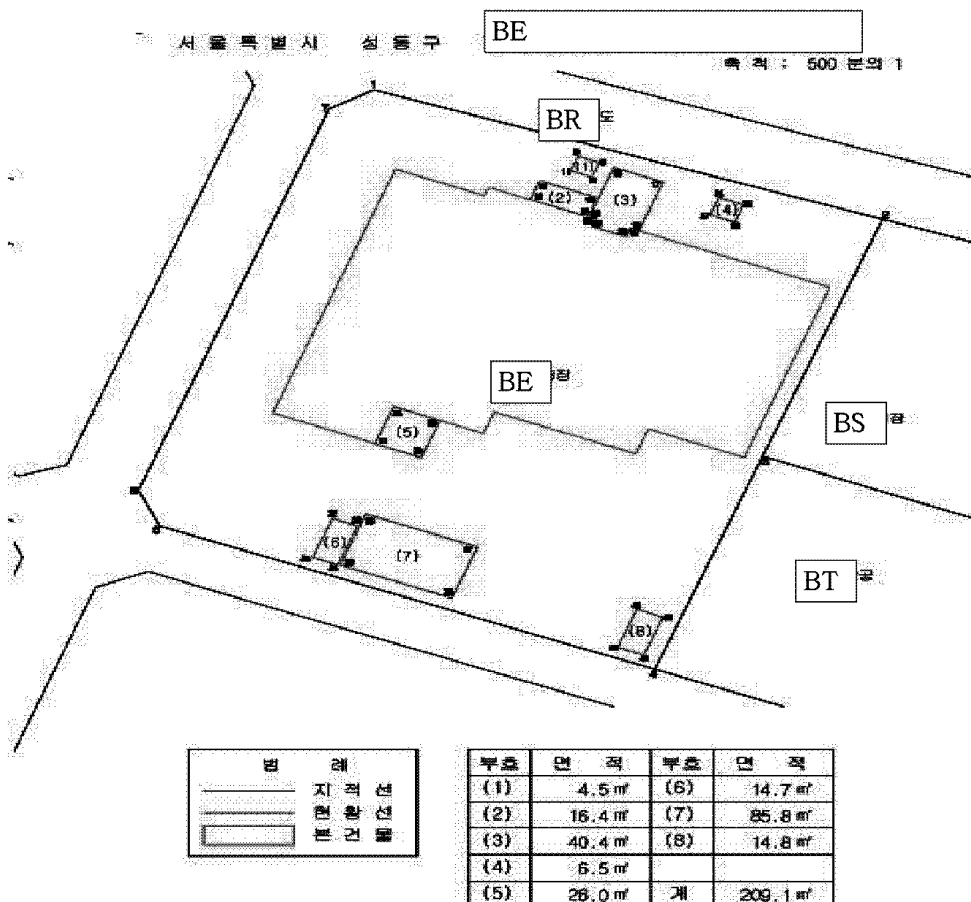
구분	항목	설계		시공(자재 포함)	비고
		자료제공	시행		
전국	건축구조물	을	갑	갑	변전소 배치 방안 결정 : 을
설비	수변압기 냉각수계통	을	을	을	또 변전소 건립시점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단리 정한 수 있음.
	공조설비	을	갑	갑	
	화재설비	을	갑	갑	설비사양 결정 : 을
	크레인설비	을	갑	갑	설비사양 결정 : 을
통신	폐이식본				
	CCTV	을	을	을	
	침투감지설비				
변전소 설비	점지공사				가기단자 압축은 을이 시행
	주변압기				
	170kV GIS				
	25.8kV GIS				
	소내변압기	을	을	을	
	케이블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기타(변전소 부대 설비)				
전력구	변전소 인출 전력구 (부시경계기준)	을	갑	갑	부지내에 수직전력구기 위치할 경우 수직전력구를 경계로 합을 원칙으로 함.

라. 이 사건 건물의 대지 현황

1) 이 사건 건물 주위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는 다음의 그림과 같

이 (1) 부분 4.5㎡에는 수직전력구가, (2) 부분 16.4㎡에는 배기구가, (3) 부분 40.4㎡에는 장비반입구가, (4) 부분 6.5㎡에는 배기구가, (5) 부분 26.0㎡에는 주차장이, (6) 부분 14.7㎡에는 배기구가, (7) 부분 85.8㎡에는 쿨링타워가, (8) 부분 14.8㎡에는 흡기구가 각 설치되어 있다[이하 위 (1) 내지 (8) 부분을 '이 사건 (1) 내지 (8) 부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1) 내지 (8) 부분에 설치된 위 시설물들은 이 사건 지하변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들인데, 그 시설물들 중 이 사건 (1), (3), (5), (7)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전력구, 장비반입구, 주차장 및 쿨링타워는 피고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U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이 사건 지하변전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1) 내지 (8) 부분에 설치된 수직전력구 등의 시설물들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내지 (8)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1), (3), (5), (7) 부분에 설치된 수직전력구, 장비반입구, 주차장 및 쿨링타워의 독점적 점유·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이 사건 지하변전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직전력구, 장비반입구, 주차장 및 쿨링타워가 이 사건 (1), (3), (5), (7)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수직전력구, 장비반입구, 주차장 및 쿨링타워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1), (3), (5), (7)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에 속하는 또는 원고들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이 사건 (1), (3), (5), (7)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항에는 '주차장(2대분 : 23.0㎡)과 수냉각설비 옥외 쿨러실(82.11㎡)을 전용면적에 추가'라고, 제12조에는 '이 사건 지하변전소 운용에 필요한 주차장 및 냉각탑부지는 전용부지로 추가하여 산정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대지 중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5) 부분 및 쿨링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7) 부분은 피고가 BD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분양부분과 함께 분양받은 피고의 전용면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주차장 및 수냉각설비 옥외쿨러실의 면적 합계[105.11㎡(= 23.0㎡ + 82.11㎡)]가 이 사건 (5) 부분 및 이 사건 (7) 부분의 면적 합계[111.8㎡(= 26.0㎡ + 85.8㎡)] 보다 6.69㎡(= 111.8㎡ - 105.11㎡) 적기는 하나, 이는 그 설치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고 보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6조 역시 면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조정 내지 변경을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및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이 사건 지하변전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BD으로부터 분양받기 위한 계약이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의 전기공급설비 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도 이 사건 지하변전소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1)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전력구, 이 사건 (3)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반입구는 이 사건 건물의 기본설계도 중 지하평면도 및 준공도면 중 지하평면도 등에 각 반영되어 있는

시설물들로서 BD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이 사건 지하변전소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처럼 이 사건 (1), (3), (5), (7)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자 분양자인 BD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서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위 시설물들의 부지인 이 사건 (1), (3), (5), (7) 부분은 애시당초 원고들의 공유에 속하는 또는 원고들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하변전소 설치공사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 (3), (5), (7) 부분에 피고만이 점유·사용할 시설물들이 설치되도록 정한 위법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0조, 제14조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변전소 부분의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첨부된 <별표1>에 의하면, 피고가 BD에게 이 사건 지하변전소 부분의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변압기 냉각수계통, 페이지폰, CCTV, 침투감지설비 등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넘어서서 피고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피고가 분양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피고의 분양금액이 결정된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를 분양받아 그곳에 이 사건 지하변전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하변전소와 관련된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㉔ 피고가 아닌 BD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부담하는 점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건물의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시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무렵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BD에게 이 사건 (1), (3), (5), (7) 부분에 피고만이 점유·사용할 시설물들이 설치되도록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에 작성되었고, 그 작성일자가 2013. 11. 26.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2), (4), (6), (8)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구 및 흡기구의 독점적 점유·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배기구 및 흡기구가 이 사건 (2), (4), (6), (8)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배기구 및 흡기구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배기와 흡기, 즉 환기를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정치훈

판사

최동환

[별지] 청구금액표

순 번	기 간 월 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총 청구금액	청 구 금 액
		2008.4.~ 2008.12.31	2009.1.~ 2009.12.31	2010.1.~ 2010.12.31	2011.1.~ 2011.12.31	2012.1.~ 2012.12.31	2013.1.~ 2013.12.31	2014.1.~ 2014.12.31	2015.1.~ 2015.12.31	2016.1.~ 2016.12.31	2017.1.~ 2017.12.31	2018.1.~ 2018.12.31	2019.1.~ 2019.12.31		
	기간합	2009.01.01.	2010.01.01.	2011.01.01.	2012.01.01.	2013.01.01.	2014.01.01.	2015.01.01.	2016.01.01.	2017.01.01.	2018.01.01.	2019.01.01.	2019.01.01.		
1		466,504	1,109,654	1,139,832	1,145,165	1,184,478	1,191,786	1,202,461	1,232,151	1,260,939	1,320,820	1,483,212	1,892,103	14,629,106	157,675
2		952,462	2,263,641	2,325,292	2,336,080	2,415,461	2,431,189	2,452,953	2,513,528	2,572,255	2,694,410	3,025,681	3,859,798	29,842,608	321,650
3		883,642	2,100,081	2,157,194	2,167,286	2,240,031	2,255,523	2,275,724	2,331,912	2,386,390	2,469,724	2,807,009	3,589,507	27,686,381	298,409
4		285,401	483,161	501,436	503,782	520,901	524,593	528,988	542,049	554,714	531,057	652,497	832,396	6,435,656	69,366
5		301,566	716,708	735,199	739,643	764,777	769,750	776,050	795,826	814,420	853,096	957,893	1,222,078	9,448,702	101,810
6		275,535	655,079	672,894	676,042	699,014	703,566	709,807	727,394	744,389	779,740	875,007	1,116,593	8,536,220	93,083
7		345,868	821,997	844,352	848,302	877,128	882,839	890,746	912,738	934,064	978,422	1,056,717	1,401,810	10,538,785	118,801
8		238,893	567,757	583,198	585,926	605,836	609,781	615,242	630,433	645,163	675,801	758,888	968,095	7,485,019	80,675
9		354,912	843,492	865,431	870,485	900,064	905,324	914,838	936,606	958,489	1,004,007	1,127,448	1,438,461	11,120,158	119,855
10		698,802	1,660,787	1,705,953	1,713,934	1,772,174	1,783,713	1,799,638	1,844,124	1,887,211	1,976,853	2,219,880	2,831,854	21,894,955	235,988
11		238,893	567,757	583,198	585,926	605,836	609,781	615,242	630,433	645,163	675,801	758,888	968,095	7,485,019	80,675
12		442,164	1,050,712	1,079,287	1,084,336	1,121,182	1,128,483	1,138,596	1,166,702	1,193,961	1,250,662	1,404,428	1,791,299	13,652,046	149,300
13		318,241	756,338	779,907	780,542	807,065	812,320	819,595	838,832	858,454	900,269	1,010,954	1,289,653	9,971,171	107,471
14		318,241	756,338	779,907	780,542	807,065	812,320	819,595	838,832	858,454	900,269	1,010,954	1,289,653	9,971,171	107,471
15		420,412	999,159	1,026,332	1,031,133	1,066,172	1,073,114	1,082,726	1,105,458	1,135,380	1,189,298	1,335,519	1,703,694	13,172,394	141,975
16		386,126	918,387	943,363	947,776	979,982	986,363	995,197	1,019,769	1,043,595	1,093,155	1,227,555	1,565,067	12,107,534	130,497
17		345,868	821,997	844,352	848,302	877,128	882,839	890,746	912,738	934,064	978,422	1,056,717	1,401,810	10,538,785	116,801

18		347,281	825,356	847,802	851,768	880,711	886,446	894,385	916,468	937,881	982,420	1,103,206	1,407,337	10,881,001	117,278
19		345,868	821,997	844,352	848,302	877,128	882,839	890,746	912,739	924,054	978,422	1,098,717	1,401,610	10,836,785	116,901
20		258,748	614,945	621,668	634,624	656,188	660,461	666,376	682,829	698,783	731,958	821,962	1,048,559	8,107,111	87,380
21		110,508	282,836	289,779	271,041	280,251	282,076	284,602	291,629	298,443	312,615	351,051	447,828	3,462,458	37,319
22		110,508	282,836	289,779	271,041	280,251	282,076	284,602	291,629	298,443	312,615	351,051	447,828	3,462,458	37,319
23		318,241	756,338	776,907	780,542	807,065	812,320	819,585	839,832	859,454	900,269	1,010,954	1,289,653	9,971,171	107,471
24		220,946	525,104	539,385	541,908	560,322	563,971	569,022	583,071	596,695	635,031	701,877	895,370	6,922,702	74,614
25		318,241	756,338	776,907	780,542	807,065	812,320	819,585	839,832	859,454	900,269	1,010,954	1,289,653	9,971,171	107,471
26		551,269	1,310,158	1,345,788	1,352,085	1,398,029	1,407,132	1,419,734	1,454,788	1,488,779	1,559,479	1,751,214	2,233,987	17,272,441	186,166
27		96,633	229,600	235,905	237,009	245,063	246,658	248,867	255,012	260,970	273,384	306,973	391,599	3,027,714	32,633
28		96,633	229,600	235,905	237,009	245,063	246,658	248,867	255,012	260,970	273,384	306,973	391,599	3,027,714	32,633
29		246,541	585,935	601,870	604,086	625,233	629,305	634,941	650,618	665,819	697,488	783,187	999,095	7,724,668	83,258
30		96,836	230,142	236,401	237,507	245,578	247,177	249,391	255,548	261,519	273,998	307,618	392,422	3,034,078	32,792
31		219,986	504,122	610,279	613,134	633,969	638,097	643,812	659,708	675,122	707,183	794,120	1,013,054	7,832,294	84,421
32		216,424	514,357	528,346	530,817	548,864	552,428	557,376	571,138	584,482	612,239	687,512	877,045	6,781,016	73,087
33		345,868	821,997	844,352	848,302	877,128	882,839	890,746	912,739	924,054	978,422	1,098,717	1,401,610	10,836,785	116,901
34		665,381	1,581,368	1,624,364	1,631,904	1,687,418	1,698,405	1,713,616	1,755,927	1,796,953	1,882,289	2,113,712	2,686,418	20,847,805	224,792
35		386,426	918,367	943,363	947,776	979,982	986,363	995,197	1,019,769	1,043,585	1,093,155	1,227,555	1,565,967	12,107,234	130,497
36		386,426	918,367	943,363	947,776	979,982	986,363	995,197	1,019,769	1,043,585	1,093,155	1,227,555	1,565,967	12,107,234	130,497
37		640,086	1,551,240	1,582,611	1,599,922	1,623,269	1,633,838	1,648,471	1,689,173	1,728,639	1,810,731	2,033,356	2,593,910	20,085,447	216,159
38		159,121	378,169	388,454	390,271	403,533	406,160	409,798	419,916	429,727	450,134	505,477	644,827	4,985,285	53,796

39		159,121	378,169	388,464	390,271	403,533	406,100	409,738	419,916	429,727	450,134	505,477	634,827	4,985,585	53,736
40		273,393	649,537	667,202	670,323	699,101	697,614	703,862	721,241	738,092	773,144	868,200	1,107,544	8,563,193	92,295
41		287,081	682,283	700,838	704,117	728,943	732,783	739,346	767,601	775,302	812,121	911,969	1,163,380	8,994,864	96,948
42		53,346	126,784	130,232	130,841	135,287	136,168	137,388	140,780	144,069	150,911	169,466	216,183	1,671,465	18,015
43		312,377	742,400	762,590	766,158	792,192	797,351	804,492	824,355	843,616	883,678	992,324	1,265,868	9,787,421	105,481
44		199,177	459,109	471,595	473,801	489,901	493,091	497,507	509,791	521,702	546,477	613,666	782,840	6,052,660	65,237
45		238,883	567,757	583,198	585,926	605,836	609,781	615,242	630,433	645,163	675,801	758,869	908,099	7,485,019	80,675
46		308,914	734,172	754,138	757,066	783,412	788,513	795,576	815,218	834,266	873,864	981,326	1,251,857	9,678,343	104,321
47		273,303	649,537	667,202	670,323	699,101	697,614	703,862	721,241	738,092	773,144	868,200	1,107,544	8,563,163	92,295
48		198,477	471,704	484,532	486,799	503,341	506,018	511,155	523,776	536,014	561,469	630,500	804,315	6,218,898	67,026
49		238,893	567,757	583,198	585,926	605,836	609,781	615,242	630,433	645,163	675,801	758,869	908,099	7,485,019	80,675
50		96,836	230,142	236,401	237,507	245,578	247,177	249,391	255,548	261,519	273,938	307,618	392,422	3,034,176	32,702
51		273,303	649,537	667,202	670,323	699,101	697,614	703,862	721,241	738,092	773,144	868,200	1,107,544	8,563,163	92,295
52		471,497	1,120,569	1,151,044	1,156,429	1,195,725	1,203,511	1,214,289	1,244,271	1,273,343	1,333,813	1,497,802	1,910,714	14,773,066	159,226
53		238,893	567,757	583,198	585,926	605,836	609,781	615,242	630,433	645,163	675,801	758,869	908,099	7,485,019	80,675
54		456,730	1,085,473	1,114,993	1,120,209	1,158,274	1,165,816	1,176,267	1,205,380	1,233,461	1,292,637	1,450,890	1,850,870	14,310,312	154,229
55		456,736	1,085,473	1,114,993	1,120,209	1,158,274	1,165,816	1,176,267	1,205,380	1,233,461	1,292,637	1,450,890	1,850,870	14,310,312	154,229
합 계		17,893,114	42,225,127	43,681,626	43,685,982	45,377,247	45,672,713	46,081,739	47,219,551	48,322,897	50,517,620	56,840,324	72,510,807	600,609,287	6,049,587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1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0.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4.78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1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4.3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5.39

3.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1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2.2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5.07

4.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지1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카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9.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3.11

5. 1등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지2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2.2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5.07

6.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2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9.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3.11

7.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지3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카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

4층 1898.05㎡

5층 1898.05㎡

6층 1898.05㎡

7층 1077.50㎡

8층 1033.72㎡

9층 951.80㎡

10층 81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96.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109.54

8.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지4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카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

지4층 1944.11㎡

지3층 696.45㎡

지2층 2916.73㎡

지1층 2760.30㎡

1층 1297.83㎡

2층 1898.05㎡

3층 1898.05m'
4층 1898.05m'
5층 1898.05m'
6층 1898.05m'
7층 1077.50m'
8층 1033.72m'
9층 951.80m'
10층 812.6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944.11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m'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305.78

9.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제지5층 호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10층 공장(아파트형) 및 근린생활시설

지5층 2031.25m'

지4층 1944.11m'

지3층 696.45m'
지2층 2916.73m'
지1층 2760.30m'
1층 1297.83m'
2층 1898.05m'
3층 1898.05m'
4층 1898.05m'
5층 1898.05m'
6층 1898.05m'
7층 1077.50m'
8층 1033.72m'
9층 951.80m'
10층 812.6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031.25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성동구

공장 3496.5m'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496.5분의 319.49